

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행정명령 공고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행정명령을 시행하고자 같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7월 26일

전라북도지사

1.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.

가. 처분대상 전라북도 도내 해당 시설·업종 : 붙임

나. 처분기간 : 2021년 7월 27일 0시 ~ 2021년 8월 8일 24시 [약 2주간]

다. 처분내용 :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조정 (붙임 참고)

- 전주, 군산, 익산, 완주 혁신도시는 3단계, 그 외 11개 시·군*은 2단계 적용

* 정읍, 남원, 김제, 완주(혁신도시 외 지역), 진안, 무주, 장수, 임실, 순창, 고창, 부안

라. 처분이유

- 정부는 4차 유행이 본격화되어 유행상황을 통제하고자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*하며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조치를 연장한다는 방침

* 단, 인구 10만명 이하 시군은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 자율 결정

마. 법적근거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각호

바. 벌칙 규정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0조제7호

사. 과태료 규정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3조제2항, 제4항

아. 시설폐쇄·운영중단 규정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 제3항부터 제5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별표10

2. 이 처분 위반한 자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, 제8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1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,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·조사·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.

<방역지침 또는 전원 등 명령 위반자 대상 과태료 세부 기준>

대상자		1회 위반	2회 위반	상한액
전원등 명령 거부한 치료 환자		50만 원	100만 원	100만 원
방역지침 위반	시설·장소의 운영자·관리자	150만 원	300만 원	300만 원
	시설·장소의 이용자 버스·열차 등 운송수단 이용자	10만 원	10만 원	10만 원

3. 또한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호의2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 같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장소나 시설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,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.
4.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참고1

전라북도 단계별 방역조치 요약표 ('21.7.27~8.8)

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-6058(2021.7.18.)에 따른 '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조정 행정명령'은 본 행정명령의 방역조치로 대체함

- ▶ '자율과 책임을 기반'으로 각 시·군별 유행상황에 따라 '거리두기 단계강화 직접시행'
- ▶ 각 시·군 특별방역시책 추가 명령 조치 가능, 기본방역수칙 준수 철저

※ 시·군 별도의 행정명령 및 방역조치 효력을 우선시 함

구분	1단계	2단계 (11개 시군)	3단계 (전주, 군산, 익산, 완주 혁신도시)	4단계
단계 명칭	■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	■ 지역 유행/인원 제한	■ 권역 유행/모임 금지	■ 대유행/외출 금지
결정·조정 권한	■ 시군구, 시도, 중대본	■ 시군구, 시도, 중대본	■ 시군구, 시도, 중대본	■ 중대본
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(주간 평균) ▶ 전국: 500명 미만 ▶ 수도권: 250명 미만 ▶ 호남권: 50명 미만 ▶ 전북: 18명 미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(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) ▶ 전국: 500명 이상 ▶ 수도권: 250명 이상 ▶ 호남권: 50명 이상 ▶ 전북: 18명 이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(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) ▶ 전국: 1,000명 이상 ▶ 수도권: 500명 이상 ▶ 호남권: 100명 이상 ▶ 전북: 36명 이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(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) ▶ 전국: 2,000명 이상 ▶ 수도권: 1,000명 이상 ▶ 호남권: 200명 이상 ▶ 전북: 73명 이상
모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4명까지 모임 가능 (5인 이상 사전모임 금지 보건복지부의 비수도권 단일화 조치) * (예외) 예방접종 완료자(최종 접종후 14일 경과자), 동거가족돌봄(아동·노인·장애인 등), 임종을 지키는 경우,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,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, 상견례의 경우 8인까지·돌잔치의 경우 최대 16인까지 허용 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(3인 이상 사전모임 금지) *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모임 가능
행사	■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	■ 100인 이상 행사 금지	■ 50인 이상 행사 금지	■ 행사 금지
집회	■ 500인 이상 집회 금지	■ 100인 이상 집회 금지	■ 50인 이상 집회 금지	■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
1그룹 시설				
구분	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
유흥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시설면적 6㎡ 당 1명 (클럽 나이트 8㎡당 1명) ■ 운영시간 제한x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시설면적 8㎡당 1명(2~4단계) (클럽 나이트 10㎡당 1명/2~3단계) ■ 24시이후 운영제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22시이후 운영제한 	■ 집합금지
	■ (감성주점, 헌팅포차 추가조치) 노래금지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 (1~4단계)			
클럽텍 무도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시설면적 8㎡ 당 1명 ■ 운영시간 제한x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시설면적 10㎡당 1명(2~4단계) ■ 24시이후 운영제한 	■ 22시이후 운영제한(3단계), 집합금지(4단계)	
	■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(1~4단계)			
홀덤펍 홀덤펍게임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시설면적 6㎡ 당 1명 ■ 운영시간 제한x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시설면적 8㎡당 1명 (2~4단계) ■ 24시이후 운영제한 	■ 22시이후 운영제한(3단계), 집합금지(4단계)	
	■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(1~4단계)			
2그룹 시설				
구분	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
식당 카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(50㎡이상 시설) (1~4단계) ■ 운영시간 제한x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24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	■ 22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(3~4단계)	
	■ 시설면적 6㎡ 당 1명			
노래(코인) 연습장	■ 시설면적 6㎡ 당 1명	■ 시설면적 8㎡당 1명(2~4단계)		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운영시간 제한x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24시이후 운영제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22시이후 운영제한(3~4단계) 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(1~4단계) 			
목적장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시설면적 6㎡ 당 1명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시설면적 8㎡당 1명(2~4단계) 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운영시간 제한x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운영시간 제한x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22시이후 운영제한(3~4단계) 	
실내체육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시설면적 6㎡ 당 1명 (체육도장 GX류 4㎡당 1명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시설면적 8㎡당 1명(체육도장 GX류 6㎡당 1명) (2~4단계) 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운영시간 제한x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운영시간 제한x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운영시간 제한x - 수영은 22시 운영제한 적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22시이후 운영제한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(체육도장)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(겨루기 대련 시합 등) 제한(권고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(탁구)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 금지,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■ (배드민턴, 테니스, 스쿼시 등)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,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■ (실내풋살, 실내농구 등)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,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.5배(예:실내풋살 15명) 초과 금지, 대회금지,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■ (GX류) 음악속도 100~120bpm 유지(고강도 유산소 운동→저강도 또는 유연성 운동으로 대체), 샤워실 운영금지 ■ (체육도장)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(겨루기 대련 시합 등) 금지, 샤워실 운영금지 ■ (피트니스) 러닝머신 속도 6km 이하 유지(안내, 고강도 유산소 운동→저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대체), 샤워실 운영금지 	
방문 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시설면적 6㎡ 당 1명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시설면적 8㎡당 1명(2~4단계) 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운영시간 제한x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운영시간 제한x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22시이후 운영제한(3~4단계) 	

3그룹 시설

구분	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
학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좌석 한 칸 띄우기 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 또는 시설면적 4㎡당 1명(좌석 없는 경우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㎡당 1명(좌석 없는 경우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㎡ 당 1명 (좌석 없는 경우) 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운영시간 제한x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운영시간 제한x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운영시간 제한x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22시이후 운영제한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(관악기, 노래학원) 노래부르기, 관악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 ■ (기숙형학원) 입사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(2~4단계) 			
영화관 공연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좌석 띄우기없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동행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 ■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,000명 이내로 제한 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운영시간 제한x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운영시간 제한x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운영시간 제한x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22시이후 운영제한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상영관, 공연장 내 음식섭취 금지 (1~4단계) 				
독서실 스타디오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좌석 한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(1~4단계) 	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운영시간 제한x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운영시간 제한x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운영시간 제한x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22시이후 운영제한
결혼식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별 4㎡ 당 1명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개별 결혼식당100인 미만 + 웨딩홀별 4㎡ 당 1명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+ 웨딩홀별 4㎡ 당 1명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친족만 허용
장례식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빈소별 4㎡ 당 1명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빈소별 100인 미만 + 4㎡당1명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빈소별 50인 미만 + 4㎡당1명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친족만 허용
이미용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시설면적 6㎡ 당 1명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시설면적 8㎡ 당 1명(2~4단계) 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운영시간 제한x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운영시간 제한x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운영시간 제한x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22시이후 운영제한
놀이공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입장인원 제한x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수용인원의 70%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수용인원의 50%(3~4단계) 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운영시간 제한x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운영시간 제한x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운영시간 제한x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22시이후 운영제한
워터파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입장인원 제한x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수용인원의 50%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수용인원의 30%(3~4단계) 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운영시간 제한x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운영시간 제한x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운영시간 제한x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22시이후 운영제한

오락실 멀티방	■ 시설면적 6㎡ 당 1명	■ 시설면적 8㎡ 당 1명(2~4단계)		
	■ 운영시간 제한x	■ 운영시간 제한x	■ 운영시간 제한x	■ 22시이후 운영제한
상점 마트 백화점	■ 판촉용 시음,시식, 마스크를 벗는 건본품 제공, 휴게공간 이용, 집객행사 금지(2~4단계)			
	■ 운영시간 제한x	■ 운영시간 제한x	■ 운영시간 제한x	■ 22시이후 운영제한
카지노 (내국인)	■ 수용인원의 50%	■ 수용인원의 30%(2~4단계)		
	■ 운영시간 제한x	■ 운영시간 제한x	■ 운영시간 제한x	■ 22시이후 운영제한
PC방	■ 좌석 띄우기없음	■ 좌석 한칸띄기(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띄우기 없음)(2~4단계)		
	■ 운영시간 제한x	■ 운영시간 제한x	■ 운영시간 제한x	■ 22시이후 운영제한
기타 시설				
구분	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
스포츠경기 (관람)장	■ (실내)수용인원의 50% (실외)수용인원의 70%	■ (실내)수용인원의 30% (실외)수용인원의 50%	■ (실내)수용인원의 20% (실외)수용인원의 30%	■ 무관중 경기
	■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(1~4단계), ■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(1~4단계)			
경륜·경정 경마장	■ 수용인원의 50%	■ 수용인원의 30%	■ 수용인원의 20%	■ 무관중 경기
박물관·미술 관 과학관	■ 시설면적 6㎡ 당 1명	■ 시설면적 6㎡ 당 1명의 50%	■ 시설면적 6㎡ 당 1명의 50%	■ 시설면적 6㎡ 당 1명의 30%
실외체육시설	■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 (3~4단계) *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.5배(예:풋살15명) 초과금지 ■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(1~4단계)			
숙박시설	■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(적계가족 예외)	■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(적계가족 예외)	■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■ 전 객실의 3/4운영	■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■ 전 객실의 2/3운영
파티룸 (공간대여업)	■ 시설면적 6㎡ 당 1명	■ 시설면적 8㎡ 당 1명 (2~4단계)		
도서관	■ 수용인원의 70%	■ 수용인원의 50%(2~4단계)		
키즈카페	■ 시설면적 4㎡ 당 1명	■ 시설면적 6㎡ 당 1명 (2~4단계)		
전시회·박람 회	■ 시설면적 4㎡ 당 1명	■ 시설면적 6㎡ 당 1명 (2~4단계)		
마사지업소 안마소	■ 시설면적 6㎡ 당 1명	■ 시설면적 8㎡ 당 1명(2~4단계)		
국제회의 학술행사	■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거리두기	■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거리두기(2~4단계)		
종교시설	■ 수용인원의 50% (좌석 한 칸 띄우기)	■ 수용인원의 30% (좌석 두 칸 띄우기)	■ 수용인원의 20% (좌석 네 칸 띄우기)	■ 비대면
	■ 모임/행사 식사 숙박 자제 *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시 지자체 사전승인	■ 모임/행사 식사 숙박 금지 * 실외행사 가능(100인 미만)	■ 모임/행사 식사 숙박 금지 * 실외행사 가능(50인 미만)	■ 모임/행사 식사 숙박 금지
학교	■ 기본 방역수칙 준수 및 전면등교 가능(1~2단계)		■ 밀집도 1/3~2/3 (고등학교 2/3 이내)	■ 원격수업
	※ 단계 조정 시 학교는 일주일 준비기간 부여, 단 단계 상향 시에는 신속 조정(교육부)			

◆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 산정에서 제외

- 예방접종 완료자=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
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

①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

-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*이 모이는 경우

* 일시적으로 지방근무·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,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(예: 주말부부) 포함

- 아동, 노인,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
-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

②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 최대 8인까지 허용**③ 돌잔치는 최대 16인까지 허용****④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**

참고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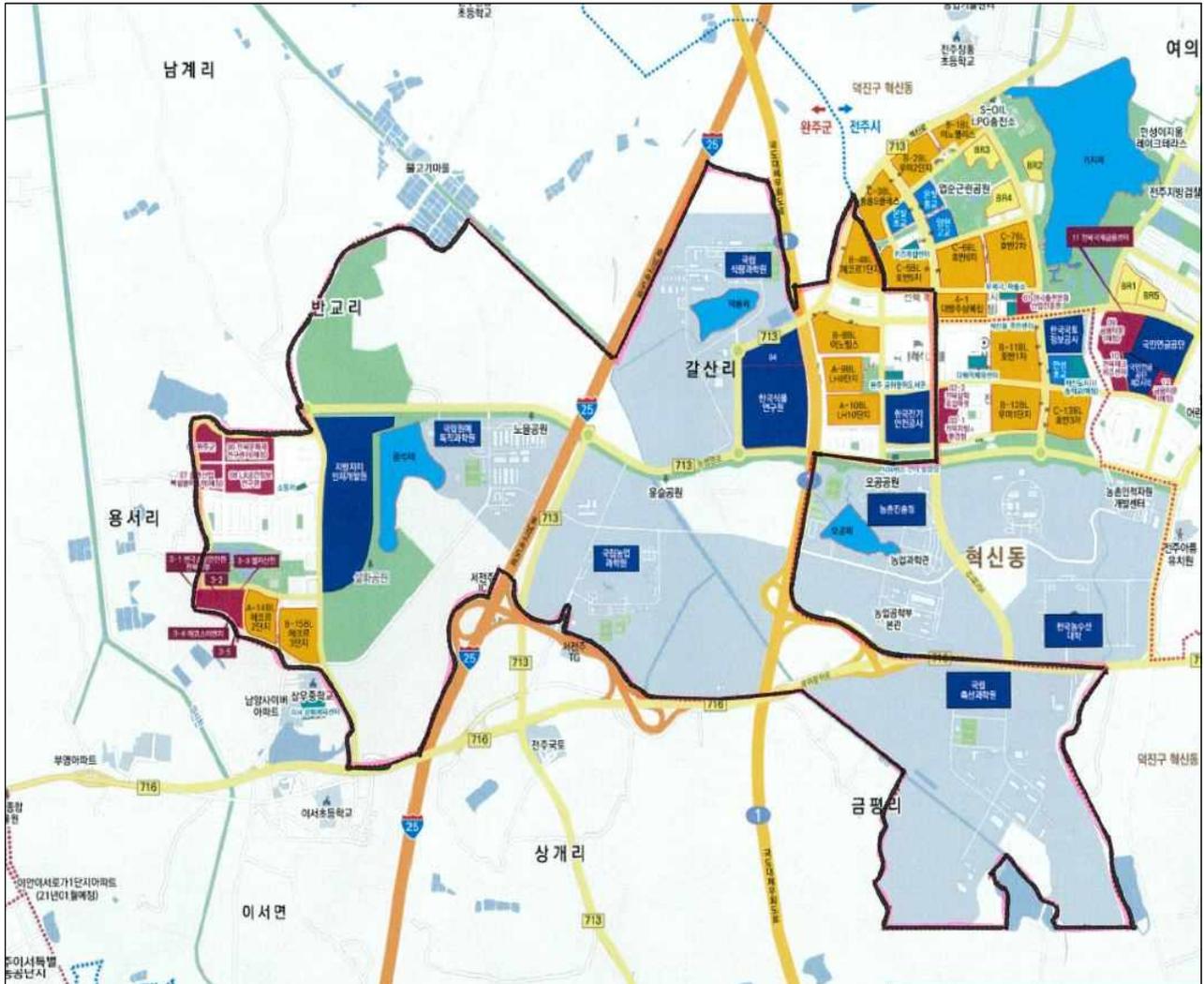
기본방역수칙 적용 설명

- ① **(마스크 착용)** 실내 다중이용시설·사업장 등에서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하고, 마스크 벗는 행동은 금지
- ② **(출입자 명부관리)** 대표자뿐만 아니라 모든 다중이용시설 출입자**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, 수기명부 등 출입자명부 작성
- 단, △유형시설(유흥주점·단란주점·감성주점·헌팅포차),△ 콜라텍, △홀덤펍은 전자출입명부 의무화
- ③ **(소독·환기 강화)** 모든 다중이용시설·사업장에 주기적 환기와 소독 의무화
- ④ **(음식섭취 금지)**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(식당·카페 등), 음식판매 부대 시설 외에는 음식섭취 금지
- ⑤ **(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)** 다중이용시설·사업장의 모든 이용자·종사자에 대해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추가 권고
- ⑥ **(방역관리자 지정·운영)** 시설 및 사업장의 방역을 총괄하는 방역관리자 지정,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추가
- ⑦ **(방역수칙·이용가능 인원 게시·안내)**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실내 다중이용시설 입구에 이용가능 인원을 게시 및 입장 안내

참고4

완주군 이서면 혁신도시 현황도

- 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6조에 따른 완주군 혁신도시 경계



※ 경계선 : 흑색 굵은 선

참고5

문의처 (전라북도청 처분담당자)

* 시군에 신고접수 또는 적발사항은 해당 시군에서 처분

연번	조치분야	부서	담당자	연락처
1	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	보건복지부 (생활방역팀)	1339, 044-202-1721~9	
2	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	사회재난과 (사회재난대응팀)	주무관 김종수 주무관 온효원 주무관 유병재	063-280-3823 063-280-3796 063-280-3822
3	클럽 등 유흥주점, 감성주점 형태 음식점, 콜라텍, 단란주점, 헌팅포차, 식당·카페(일반·휴게음식점, 제과점영업)	건강증진과 (식품위생팀)	주무관 김영옥 주무관 광경은 주무관 김종윤	063-280-2456 063-280-2440 063-280-2446
4	요양시설	노인복지과 (노인시설안전팀)	주무관 강란희	063-280-2461
	요양병원	보건의료과 (의약응급의료팀)	주무관 정고은	063-280-4689
	정신의료기관	건강증진과 (정신건강팀)	주무관 이세라	063-280-4690
5	노래연습장, PC방, 오락실·멀티방, 영화관	문화예술과 (문화콘텐츠팀)	주무관 노연우	063-280-3386
6	학원, 독서실, 교습소	(주관) 전북교육청 미래인재과	주무관 이주희	063-239-3442
		(협조) 자치행정과 (행정팀)	주무관 손인준	063-280-2947
7	실내·외체육시설, 겨울 스포츠 시설	체육정책과 (체육시설관리팀)	주무관 김성수 주무관 안채영	063-280-2543 063-280-2542
8	숙박시설	농어촌숙박시설 (농어촌정비법)	주무관 정신성	063-280-4195
		숙박시설 (관광진흥법)	주무관 조성희	063-280-2704
		숙박업소 (공중위생관리법)	주무관 조공린	063-280-4673

연번	조치분야	부서	담당자	연락처
9	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	일자리경제정책관 (소상공인팀)	주무관 문혜숙	063-280-3256
10	백화점·대형마트, 상점·마트(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, 300㎡이상)		주무관 김강준	063-280-3257
11	놀이공원·워터파크(물놀이형 유원시설)	관광총괄과 (토탈관광팀)	주무관 채범진	063-280-3301
12	공연장	문화예술과 (도서관문화시설팀)	주무관 소병훈	063-280-3387
13	결혼식장	여성청소년과 (여성권익팀)	주무관 최하라	063-280-2524
14	목욕장업, 이·미용업	건강증진과 (식품위생팀)	주무관 조공린	063-280-4673
15	장례식장	노인복지과 (노인복지팀)	주무관 장경애	063-280-2513
16	관광명소	관광총괄과 (토탈관광팀)	주무관 전국진	063-280-4742
17	종교시설	문화유산과 (종무팀)	주무관 강승주	063-280-3303
18	어린이집	사회복지과 (보육정책팀)	주무관 이창승	063-280-4762